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4. 7. 11.

발 의 자 : 홍성환의원의 1인

1. 개정이유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
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일부
조정되어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
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조급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개정조례안
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

- 가. 현행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을
지급하는 일비를 “50,000원”으로 조정
(안 제6조)
- 나. 제7조제1항과 관련한 국내여비지급기
준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를 조정하
고, 비고중 제1호를 삭제(별표1)
- 다. 제7조제2항 관련한 국외여비지급기
준중 숙박비 및 식비를 조정하고자 함
(별표2)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 별표4, 별표5 및 별표6

4. 개정조례(안) : 별 칙

5. 예산조치필요성 : 필 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
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별표1]중 현지교통비란, 숙박비란 및 식비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식탁료란을
삭제하며, 비고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
호로 한다.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6,500	20,700	11,000
6,500	16,200	10,500

[별표2]중 숙박비란 및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가등급 130	가등급 107
나등급 90	나등급 78
다등급 72	다등급 58
라등급 62	라등급 49
가등급 114	가등급 81
나등급 74	나등급 59
다등급 55	다등급 44
라등급 46	라등급 37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생략” 제6조(일비지급기준)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으로 한다.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임	현금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사비 (1일당)	비준비 식탁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갑지	갑지	800
					을지	을지	을지	
					5,000	17,000	11,000	
					4,500	15,000	9,5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갑지	갑지	800
					을지	을지	을지	
					4,500	14,000	10,500	
					4,000	11,500	9,000	

비고: 1. “갑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2. ~5. “생략”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임	현금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사비 (1야당)	비준비 비준비금
의장 부의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가등급 100	가등급 53	“생략”
						나등급 79	나등급 46	
						다등급 60	다등급 40	
						라등급 40	라등급 33	
의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가등급 83	가등급 48	“생략”
						나등급 66	나등급 42	
						다등급 50	다등급 36	
						라등급 33	라등급 30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임	현금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사비 (1일당)	비준비 식탁료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삭제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삭제

비고: 1. “삭제”

1.~4. “현행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음”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임	현금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사비 (1야당)	비준비 비준비금
의장 부의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등급 130	가등급 107	“현행과 같음”
						나등급 90	나등급 78	
						다등급 72	다등급 58	
						라등급 62	라등급 49	
의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등급 114	가등급 81	“현행과 같음”
						나등급 74	나등급 59	
						다등급 55	다등급 44	
						라등급 46	라등급 37	